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35
----------	-------

발의연월일 : 2025. 11. 12.

발 의 자 : 위성곤 · 오세희 · 임호선
장철민 · 강득구 · 서미화
김기표 · 김영호 · 강준현
박희승 · 양문석 · 추미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헌법 교육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공무원에게 헌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0조의2 신설 등).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50조의2”를 “제50조의2, 제50조의3”으로 한다.

제50조의2를 제50조의3으로 하고,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헌법 교육)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헌법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제78조제5항 중 “제50조의2”를 “제50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 범위) ①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u>제50조의2</u> ,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 ----- ----- ----- ----- ----- --- <u>제50조의2, 제50조의3</u> ----- ----- ----- ----- -----.
② ~ ④ (생략) <u><신설></u>	② ~ ④ (현행과 같음) <u>제50조의2(헌법 교육)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 <u>② 헌법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u>
<u>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u> (생략)	<u>제50조의3(적극행정의 장려)</u> (현행 제50조의2와 같음)
제78조(징계 사유) ① ~ ④ (생략)	제78조(징계 사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u>제50조의2</u> 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⑤ ----- ----- <u>제50조의3</u> ----- ----- -----.
---	---